##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본질적특징

김경현

오늘 우리 혁명실천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법률제도 특히 행 정법률제도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그 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 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정치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됩니다.》

## (《김정일선집》 제10권 증보판 134폐지)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그자체의 혁명 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국가관리와 사회 생활전반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 권적이며 통일적인 조직, 관리, 집행활동 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무기로서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여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자 본주의행정법률제도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다른 법률제도들과도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본질적특징은 무 엇보다먼저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 을 직접 조직하는 제도라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체 주민과 령토를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사회주의국가에 의하여 전사회적으로 집행되게 된다.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법으로 전환시켜 권력적담보밑에 전사회적, 전령토적범위에서 실현해나간다. 특히 행정법률제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 관리, 통제하는 기본수단이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당의 로선과 정 책집행을 직접 조직하는 제도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주의국가행정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만큼 사회주의국가행정의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리해하자면 그것을 정치와의 련관속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으로서 정책작성과 그 집행을 본질적내용으로 한다.

정치는 당이나 국가와 같은 일정한 정치조직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사업을통하여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정치를 실현한다면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법으로 전환시켜 권력적담보밑에 그것을 전사회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실현한다.

행정은 주권을 쥔 계급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나가는 권력적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인것만큼 행정은 법을 무기로 하는 국가기관들의 권력적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회주의국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법으로 전환시켜 권력적담보밑에 전령토적, 전사회적범위에서실현해나가는 정치활동 즉 국가정치를 행정이라고 한다.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국 가기관들의 행정활동을 법으로 규제한것이 행정법이며 행정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확립된 조직, 관리, 집행질서의 공고한 체 계가 다름아닌 행정법률제도인것이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당의 로선과 정

책집행을 직접 조직하는 제도로 되는것은 또한 행정적집행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 책의 직접적집행자이기때문이다.

행정법은 국가기관들의 행정활동을 규제한 법이며 행정법률제도는 행정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행정적집행기관들의 행정활동질서 즉 사회생활에 대한 조직, 관리, 보장활동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행정법률제도는 행정적집행기관들의 행정적조직, 관리, 보장활동에 의하여 수립되는 것만큼 행정적집행기관의 성격과 사명은 곧 그에 기초한 행정법률제도의 성격과 사명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제도에서 정부를 비롯한 행정 통치기관들은 방대한 행정권력을 틀어쥐 고 대독점자본가계급의 탐욕적요구와 리 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강권통치의 도 구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내 각과 내각 위원회, 성, 지방 각급 인민위 원회를 비롯한 행정적집행기관들은 그 사 명과 역할에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 접적집행자이다. 사회주의헌법은 내각에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에 해당한 임무와 권한을, 내각 위 원회. 성에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 중앙 의 부문별관리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그 에 해당한 임무와 권한을, 지방인민위원회 에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그에 해당한 임무와 권한을 부 여하고있다. 이것은 행정적집행기관이 본 질에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 근로인민 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는 주권 기관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하 여 사회생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 하는 기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행정적집행기관은 주 권기관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한 치밀한 행정조직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 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기관이다. 바로 행정적집행기관의 사회생활에 대한 조직, 관리, 보장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비롯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철저히 집행되여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적집행기관이 주권기관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하여 사회생 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활동은 곧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위 한 조직, 관리, 보장활동이며 이것은 행정 적집행기관들의 활동질서의 공고한 체계 인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그 사명과 역 할에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 철 저히 복무하는 제도라는것을 말해준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본질적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는데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며 현시기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경제를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은 공화국 행정적집행기관의 중요활동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중요하게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된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되는것은 우선인민생활을 돌보는것이 사회주의국가행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행정

권력을 통하여 사회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국가의 행정기관들은 군대, 경찰, 검찰을 비롯한 방대한 폭압기관들과 수많은 수탈기관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파쑈적통치질서를 유지하고 인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수탈하는데 복무하며 이것은 권력만능의 자본주의국가행정의 본질적측면을 이룬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국가의 행정활동에서 중요한것은 국가가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며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에만 고유한 행정활동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 도에서 행정적집행기관은 인민의 복리증 진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 장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국가행정의 본 질적특징과 우월성이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행정기관들의 행정활동을 법으로 규제한것이 행정법이며 행정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확립된 인민생활보장질서의 공고한 체계가 다름아닌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인것이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되는것은 또한행정법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 및문화교양자적기능과 역할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들의 행복한 물 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 적 및 문화교양자적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중앙행정적집행기관과 각급 지방행정적집행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 생활의 기초인 물질적부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조직지도를 통일적으로 실현한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기능과역할을 통한 물질적부의 생산과 분배는 중요하게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중요생산수단과 문화교양수단들이국가의 소유로 되여있고 그에 대한 지도와 관리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수단이공화국 행정법률제도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헌법과 기타 여러가지 형태의 다양한 행정법문건들에 규제되여있는 공화국행정법률제도는 경제문화건설과 사회주의적분배에서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권한, 활동질서를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행정적집행기관들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본질적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선군시대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는 제도라는데 있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자기의 규제적 및 통제적기능과 교양자적 및 조직동원자 적역할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 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건설투쟁 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선군시대 강성 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제도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건 설을 힘있게 추동하기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정치사상 적위력, 단결의 위력이다.

국가의 행정법규범들과 규정, 세칙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보위하고 수령을 중 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수 호하는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성한 의 무로 규제함으로써 온 사회의 일심단결실 현의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제4장 국방 제59조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것을 우리 혁명무력의 첫째가는 사명으로 규제하고있으며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81조에서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을 선군시대 공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대표적인 행정법규범들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은 우리 당정책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행위준칙으로서 온 사회에 대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확립의 중요한 법률적기초로 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모든 부문,모든 단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무적으로 복종하고 집행하며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인것으로 하여 사회적질서와 제도확립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되고있다.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과 그에 기초하여 수립된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수호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선군시대 강성 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제도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무적의 사회주의군사강 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 법》제6장 국가기구에 규제된 행정법적의 의를 가지는 법규범들은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 수위로 하는 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기본으로 하는 가장 혁명적인 국가기관체계를 규제하고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게 국방을 최우선시하는데 필요한 일체 권한을 부여하고있으며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임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규제함으로써 국가기관파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혁명의 수뇌부의 유일적령도체계의 확립과 강력한 자위적국방력건설의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전인민적사업이며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군사강국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보위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헌법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86조에서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규제하고있다.

선군정치의 성과적실현과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건설은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과 국가 의 국방정책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 인 복종과 집행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제82조에서 국가의 법을 지키는것을 공민의 기본의무의 하나로 규제하고있으며 기타 행정법규들에서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군사관계분야의 행정법규들과 그에 기초하여 확립된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당의 선군정치실현,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위력한 법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가 선군시대 강성 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제도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기때문이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국가의 경제조직 자적기능실현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경제 강국건설의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권력을 사회관리의 만능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의 행정법률제도는 폭압정치의 기본수단, 자본주의적착취질서유지와 수탈의 기본도구로 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제도에서는 국가가 전반적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그에 직접참가할수 없으며 이로부터 행정법규범들이 아니라 자본주의시장경제관계를 규제하는 자본주의적민법규범들이 경제법률체계에서 기본자리를 차지하고 경제활동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행 정법률제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수 단으로 복무한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수행에서 노는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의 역할은 그 어느 법도 대신할수 없다.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국가예산의 수입과지출, 협동생산과 자재보장, 생산물의 분배와 류통, 교환과 소비, 기업관리 및 생산경영활동을 비롯하여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실현에서 제기되는 중요경제적문제들이 다 행정법규범들에 의하여 규제되며 집행되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광범한 인민대 중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적 극 조직동원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로서의 국가에 의하여 조직되며 그 실현의 기본무기는 로동관계분야의 행정법규범들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 도에서 로동의 성격과 로동생활의 기본원 칙, 공민의 기본의무의 하나로서의 로동의 무에 대하여 규제하고있으며 기타 로동법 규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의무, 로동조직, 로 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로동보호, 휴식,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보장 등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 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강 성국가건설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이밖에도 우리 인민의 경제강국건설을 저해하는 경제관 리질서위반행위와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 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도 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행정법과 행정법률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